

충청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손윤목

충청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6년 10월 3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개정이유

- 「주택법」에서 규정했던 조문이 「주거기본법」 및 「공동주택관리법」으로 이관되면서 조문의 제목과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개정

3. 주요내용

- 「주택법」에서 규정했던 ‘주택종합계획의 수립’ 및 ‘주택정책심의위원회’ 조문이 「주거기본법」으로 이관되면서 명칭을 각각 ‘주거종합계획의 수립’ 및 ‘주거정책심의위원회’로 변경(안 제2조, 제3조)

4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「주택법」에서 규정했던 ‘주택종합계획의 수립’과 관련된 조문이 「주거기본법」 및 「공동주택관리법」으로 이관되면서 관련 조문의 제목과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, 주요내용은

‘주택종합계획’을 ‘주거종합계획’으로 변경하고, ‘주택정책심의위원회’를 ‘주거정책심의위원회’로 변경하며, 각각 변경된 법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